

[우 송 대 학 교 A I 경 영 학 과 학 생 회 칙]



■ 제 1장 총칙

제 1조 (목적)

본 회는 우송대학교 AI경영학과 학생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 2조 (목적)

본 회는 우송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의 특성과 사명에 입각하여 자립, 단정, 독행의 학훈을 바탕으로 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창의적인 학구 능력을 배양하며 학교 설립의 정신에 입각한 학생자치활동을 실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.

제 3조 (설치)

본 회는 본 대학 내에 둔다.

제 4조 (회원의 자격)

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 학과 재학하는 전 학생으로 한다. 다만, 휴학 중인 자와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고, 제적 또는 자퇴와 동시에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.

제 5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본회의 회원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.

제 6조 (구성)

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, 그리고 학과 집행부 및 학생회, 대의원(학년별 과대표)를 둔다.

제 7조 (효력정지)

본회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정지한다.

제 8조 (기능)

본 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가. 학술, 예술 및 체육활동
- 나. 기술 및 근로 봉사 등 각 분야의 봉사활동
- 다. 학생 자치와 관련한 제반 행정 업무 및 활동
- 라. 학과의 중대한 재난 시 지원활동
- 마. 학과발전기획 등 주요 대학 의사결정에 따른 의견개진 활동

■ 제 2장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

제 9조 (지위)

- 가. 학생회장은 본 학과를 대표하여 집행부 및 학생회, 대의원(학년별 대표) 회의 의장이 된다.
- 나.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 결위시 그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.

제 10조 (직무)

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.

- 1)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,
- 2) 집행부 및 대의원(학년별 대표)회의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의장이 된다.
- 3) 본 회의 전체 사업을 계획, 수립하여 학생회 정기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을 집행한다.

제 11조 (선출 및 인준등)

- 1)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.
 - ①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학과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.

② 학칙 제45조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출한다.

③ 학생회 정, 부회장 선거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.

2) 위 항에 의하여 선출한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학과 사무실의 심의를 거쳐 학과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3)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“선출 해 11월(인수인계 기간 포함)~ 다음 해 11월” 1년으로 한다.

4)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■ 제 3장 집행부

제 12조 (구성)

본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사무국, 문화국, 학생국, 학술국, 복지국, 유학생국 등의 집행부를 두며 각 부서에 국장(집행부), 부장(학생회 부원), 차장(학생회 부원) 각각 1인씩을 둔다.

제 13조 (집행부의 업무 및 권한)

집행부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- 1) 본회 고유의 사업과 학과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사업을 집행한다.
- 2) 학생회장의 통괄하에 소관 업무를 집행한다.
- 3) 각 부서장은 대의원회 요구시 출석, 발언할 수 있다.
- 4)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.
 - ① 사무국장 : 본회 제반사업의 서무회계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.
 - ② 복지국장 : 학생 복지 및 학과의 홍보 및 소통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.
 - ③ 문화국장 : 예술·문화 활동 및 동아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.
 - ④ 학생국장 : 체육활동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.
 - ⑤ 학술국장 : 학업 증진 도모 및 학술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.
 - ⑥ 유학생국장 : 유학생 활동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.

제 14조 (선출 및 인준)

- 1) 부서장은 학칙 제45조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학생회장이 추천한다.
- 2) 위항에 의하여 선출된 자는 학과사무실의 심의를 거쳐 학과장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, 추천서류 및 서약서를 제출한다.
- 3) 부서장의 임기는 회장단과 동일하다.
- 4) 부서장은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.
- 5) 집행부 구성과 관련하여 특이사안 발생 시, 학과사무실 지도 조교와 회의를 통해 조정 결정한다.

■ 제 4장 학생대표 선출 및 학생회

제 20조 (지위)

학과 학생회는 학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학과 학생자치활동의 중심기구이다.

제 21조 (구성 및 조직)

- 1) 학과 학생회는 위 내용과 같이 동일하며 학과 재학생으로서 당해 학기 등록을 필 한자로 한다.
- 2) 학과 학생회는 위와 동일하며 학칙 및 학생회칙과 상반되는 않는 범위 안에서 조직 운영 가능하다.

제 22조(학생회장 선출 및 자격)

- 1) 선출시기는 당해 학년도 1학기 성적 확정 후 차기 학년도 개강 전까지 선출한다.
- 2) 선출방법은 학과(부)별 내부규정에 의해 선출한다.
- 3) 피선거격은 2학년(3학년 진급 예정자)으로 학급대표로 하며, 임기는 1년간으로 하고 당연직 학급대표가 된다.
- 4) 임기는 차기 학년도 1학기부터 차기학년도 2학기까지 1년간으로 한다(단, 차기학년도 2학기 임기의 경우 직전학기 3.0이상 유지하여야 함).
- 5) 제22조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학과사무실 조정에 따른다.

제 22조의 2 (권한)

- 1) 학생회장은 학과(부) 학생회를 대표하며, 학과(부) 학생회 관련 사무를 총괄한다.

- 2) 대의원 자격을 갖는다.
- 3) 상임대의원 자격을 갖는다.

제 23조 학년별 대표(이하 과대표)

- 1) 학급별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의 대표를 둔다.
 - ① 당해 학년도 1학기 성적이 3.0이상인 학생
 - ② 품행이 방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지도력이 있는 학생
 - ③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
 - ④ 해당 학(부)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
 - ⑤ 과대표는 대의원 자격을 갖는다.
- 2) 과대표는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 사무를 관장한다.

■ 제 5장 학생회지도위원회

제 25조 (구성)

- 1) 본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회지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2) 위원장은 학과 취업전공주임교수(이하 학과장)가 되며, 위원장의 권한 대행으로 비교과 조교가 지도한다.
- 3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
제 26조 (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)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2) 학생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3)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
- 4) 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- 5) 학생 간부 선임에 관한 심의 사항
- 6) 기타 학생회 활동에 관한 지도사항

■ 제 6장 회칙개정

제 27조 (회칙개정의 발의)

위원회에서 회칙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청으로 대의원중 회칙개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 28조 (개정)

회칙개정은 발의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, 학과 정기회의에서 의결한다.

제29조 (공포)

- 1) 제28조에 의해 확정된 회칙은 위원회의 심의와 학과장의 인준을 거쳐 확정된다.
- 2) 위원회는 회칙개정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및 인준을 해야 하며, 학과장의 인준을 받은 즉시 이를 공포한다.

우 송 대 학 교 엔 디 컷 국 제 대 학 A I 경 영 학 과 학 생 회 지 도 위 원 회

